

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
국산연구장비기술경쟁력강화(연구장비산업 지속성장 지원)
시행 공고

국산연구장비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통한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도 ‘국산연구장비 기술경쟁력강화’(연구장비산업 지속성장 지원)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2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봉수

☐ 사업목적

- 연구장비 혁신기술 개발 및 수요대응형 전략 연구장비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연구장비산업 지속성장 지원

☐ 지원대상

- 대학·출연(연) 등 공공연구기관, 연구장비 개발·제조 기업 등

☐ 주요내용

- (국산연구장비혁신기술개발) 연구자와 연구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, 이를 활용한 우수논문 게재 등 기술축적 및 신뢰도 향상
- (수요대응형전략연구장비개발)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요 기반 연구장비·기술의 활용·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기술개발

※ 세부 사업내용 신청안내서 참조

1. 세부 사업개요

☐ 지원규모

내역사업명		지원 기간 및 규모	신규과제	지원대상	비고
연구 장비 산업 지속 성장 지원	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	과제별 260백만원×2년 (1차년도 9/12개월, 195백만원)	10개 과제	[주관] 공공연구기관, [공동] 기업	공동연구 필수
	수요대응형전략 연구장비개발	과제별 440백만원×3년 (2년+1년) (1차년도 9/12개월, 330백만원)	2개 과제	[주관] 기업, [공동] 공공연구기관	공동연구 필수

※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※ 지원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/단체, 기업 등

☐ 지원내용

구분	지원내용
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개발	○ (목적) 국산연구장비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축적 및 신뢰도 향상 ○ (지원내용) 연구자/연구장비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<u>혁신기술개발</u> 및 <u>SCI급 우수논문 창출</u> 등 지원
수요대응형전략연구 장비개발	○ (목적) 국가전략기술 분야 수요기반 연구장비/기술의 활용·확대를 위한 스케일업 기술개발 ○ (지원내용) 전략기술 분야 수요를 기반으로 <u>연구장비 스케일업을 통해 산업용 진단·검사 장비 등으로 활용을 위한 R&D 지원</u>

※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안내서 참조

2. 관련규정

- ☐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, 「연구산업진흥법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3.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

- ☐ 공고기간 : 2025.1.22.(수) ~ 2.27.(목) 18:00 (37일간)
- ☐ 신청기간 : 2025.2.13(목) 09:00 ~ 2.27.(목) 18:00
- ☐ 제출서류 : 신청안내서 참조
- ☐ 사업신청 문의처
 -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
 - 유병헌 선임(02-736-9823, matrix@compa.re.kr)
 - 박제민 연구원(02-736-9029, ejjm60@compa.re.kr)

4. 사업신청 유의사항

- ☐ 지원제외 대상
 - (참여제한)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·참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(기업) 중 기관(기업)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 - (연구개발계획서 중복제출 제한) 동일한 컨소시엄으로 ‘국산연구장비혁신기술개발’, ‘수요대응형전략연구장비개발’ 간 중복 신청 불가
 - (기타사항) 제출서류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, 과제 신청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구분	예외 사항	비고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	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,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	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
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	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	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

□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(기업수행 과제)

-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부담금 (현금부담금 포함) 및 과제종료 후 기술료 부담이 있음

※ 세부사항은 사업신청 안내 자료 참조

□ 보안과제

-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·일반)을 분류하여 연구개발 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
-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
-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사업단인 협약 전 「대외무역법」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

- 첨부 1. 신청안내서 1부
2. 신청양식 1부
3. 관련규정 1부

끝.